

2021년 2월 1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이강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규칙 제3224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보호대상자” 를 “지원대상자” 로 한다.

제18조제5항 전단 중 “다른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를 “따라” 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를 “연구사 또는 지도사” 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점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의 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생략)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산점의 범위와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자율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종전 규정을 개정된 평정규칙에 따라 특정한 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실적 가산점에 관한 내용까지 확대하여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보호대상자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
 - 공무원 임용령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개선내용 중 오류사항 수정
 -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호

「광주광역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16호, 2020.12.9.)
 -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결과 추후 조례 개정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통보 내용
 - (제24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공무원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제38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바, 법률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님

2.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총무과

(전화 : 062-613-2872, FAX : 062-613-2879,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E-mail : kisergx@korea.kr)

4. 기타사항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5614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삭 제>
제38조(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삭 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의 구분(안 제2조)
 -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4개 직종으로 구분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간사서기의 자격, 회의록 작성 내용, 수당지급,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서면심의 요건 등
- 채용(안 제4조)
 - 연간채용계획 및 종합채용계획 수립, 필기·서류·면접시험 실시, 채용공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신청, 근로계약 체결 등
- 신분증(안 제7조)
 - 공무원 신분증은 인사정책관이 발급, 신분증 패용, 재발급 비용 부담 등
- 복무(안 제12조-제23조)
 -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겸직금지, 겸직시 소속기관장 추천에 의해 총무과장 사 전허가를 받아야 가능
 - 근무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공가, 병가,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규정
- 신분 및 권익의 보장(안 제24조-제30조)
 -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로 전보, 필요시 타 소속기관 전보 가능
 -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자의 의무, 복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 징계의 효력(안 제31조)
 -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종류 및 효력 규정
- 징계의결 요구(안 제32조)
 - 소속기관장은 징계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징계안건 심의(안 제35조)
 - 징계양정기준(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 및 진술권 부여, 관계인 심문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이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sergx@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팩스 : 062-613-287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062-613-2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wangju.go.kr) 시정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별지서식 및 별표(징계양정기준) 각 1부. 끝.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호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1.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사회단체등의 사회공헌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합리적 대안결정 및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2652, FAX 062-613-2949, E-mail: jsk434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물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9호

2021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시험 경비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품질시험과)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수수료 및 현장시험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2021년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성토용 흙 (12종목)	0.08mm체 통과량	20,000	4	5kg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kg이상
	입 도	208,000	4	5kg이상
	밀 도	55,000	3	3kg이상
	액성한계	60,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9,000	10	40kg이상
	다 점	191,000	4	1회당
	평판재하	192,000	7	
	직접전단시험	142,000	7	
	투수(경수위)	216,000	10	10kg이상
퇴매우기 및 구조물뒤택음 (10종목)	0.08mm체 통과량	20,000	4	5kg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kg이상
	입 도	208,000	4	5kg이상
	밀 도	55,000	3	3kg이상
	액성한계	60,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9,000	10	40kg 이상
	다 점	191,000	4	
	평판제하(성토체)	192,000	7	1회당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노체 (10종목)	0.08mm체 통과량	20,000	4	5kg 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kg 이상
	입 도	208,000	4	5kg 이상
	밀 도	55,000	3	
	액성한계	60,000	3	3kg 이상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9,000	10	40kg 이상
	다 점	174,000	4	
	평판제하	192,000	7	1회당
노상 (10종목)	0.08mm체 통과량	20,000	4	5kg 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kg 이상
	입 도	208,000	4	5kg 이상
	밀 도	55,000	3	
	액성한계	60,000	3	3kg 이상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9,000	10	40kg 이상
	다 점	173,000	4	
	평판제하	192,000	7	1회당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2종목)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20,000	4	10kg 이상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37,000	7	
	마 모	41,000	5	
	노상토지지력비(CBR)	320,000	10	40kg 이상
	다 점	172,000	4	
	체가름	190,000	7	
	두 계	135,000	4	1회당
	함수비	13,000	3	3kg 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평판제하	192,000	7	1회당
	모래당량시험	75,000	7	5kg 이상
	안정성	89,000	15	20kg 이상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입도조정기층 (11종목)	밀도 및 흡수율	38,000	7	10kg 이상
	안정성	89,000	15	20kg 이상
	마 모	38,000	5	
	노상토지지력비(CBR)	320,000	10	40kg 이상
	다 점	172,000	4	
	모래당량	76,000	7	5kg 이상
	체가름	192,000	7	4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4,000	4	10kg 이상
	함수비	13,000	3	3kg 이상
	현장밀도	78,000	4	1공당

	평판제하	192,000	7	1회당	
잔골재 (9종목)	밀도 및 흡수율	39,000	7	5kg 이상	
	입도, 조립률	42,000	7	2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9,000	4	10kg 이상	
	유기 불순물	22,000	7	5kg 이상	
	점토당어리	30,000	7	2kg 이상	
	모래당량	76,000	7		
	안정성	93,000	15	20kg 이상	
	염화물 함유량	25,000	4		
	표면수량	36,000	4	2kg 이상	
굵은골재 (7종목)	밀도 및 흡수율	39,000	7	10kg 이상	
	입도, 조립률	42,000	7	4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9,000	4	10kg 이상	
	마모율	38,000	5	40kg 이상	
	안정성	93,000	15	20kg 이상	
	표면수량	36,000	4	5kg 이상	
	편장석률	23,000	4	5kg 이상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부순 잔골재 (9종목)	밀도 및 흡수율	39,000	7	5kg 이상	
	입도, 조립률	42,000	7	2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9,000	4	10kg 이상	
	유기 불순물	22,000	7	5kg 이상	
	점토당어리	30,000	7	2kg 이상	
	모래당량	76,000	7		
	안정성	93,000	15	20kg 이상	
	염화물 함유량	25,000	4		
	표면수량	36,000	4	2kg 이상	
부순 굵은골재 (6종목)	밀도 및 흡수율	39,000	7	10kg 이상	
	입도, 조립률	42,000	7	4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9,000	4	10kg 이상	
	마모율	38,000	5	40kg 이상	
	안정성	93,000	15	20kg 이상	
	표면수량	36,000	4	5kg 이상	
순환골재 (8종목)	밀도 및 흡수율	39,000	7	10kg 이상	
	입도, 조립률	42,000	7	40kg 이상	
	0.08mm체 통과량	19,000	4	10kg 이상	
	마모율	38,000	5	40kg 이상	
	안정성	93,000	15	20kg 이상	
	표면수량	36,000	4	5kg 이상	
	굳이지안 콘 크리트 (5종목)	슬럼프 또는 슬럼프 크리프	3,000	4	20kg 이상
		공기량	19,000	4	

	염화물 함유량	17,000	4	
	압축강도	12,000	7	1조3개
	공시체제작	48,000	실소요일	20kg 이상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콘크리트 포장 (2종목)	평탄성 / 종방향	36,000	7	-
	두께	29,000	4	1공당
철근콘크리트용 분장 (6종목)	화학적분	23,000	4	1조3개(각50cm) 화학적분시험 추가시1조4개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26,000	4	
	인장강도	26,000	4	
	연신율	26,000	4	
	굽힘성	13,000	4	
	결모양, 치수, 무게	5,000	4	
플랜트 혼합물 (5종목)	역청함유량	117,000	5	5kg 이상
	체가름	129,000	5	
	마살안정도	86,000	14	
	공시체제작	39,000	4	
	인장강도비(TSR)	197,000	10	
혼합물의 포설 (3종목)	밀도	69,000	4	1공당
	두께	29,000	4	1공당
	평탄성 / 종방향	36,000	7	-
포틀랜드 시멘트 (2종목)	분말도	37,000	4	5kg 이상
	압축강도	39,000	32	1조3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2종목)	분말도	38,000	4	5kg 이상
	압축강도	80,000	32	1조3개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목)	분말도	41,000	4	5kg 이상
	압축강도	95,000	32	1조3개
메이슨리 시멘트 (2종목)	분말도	39,000	4	5kg 이상
	압축강도	42,000	32	1조3개
플라이애시 시멘트 (2종목)	분말도	29,000	4	5kg 이상
	압축강도	38,000	32	1조3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1종목)	압축강도	38,000	32	1조3개
콘크리트 벽돌 (4종목)	결모양	10,000	5	1조10개
	치수	10,000	5	
	압축강도	27,000	5	
	흡수율	49,000	5	
종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시료량
점토 벽돌 (4종목)	결모양	10,000	5	1조5개
	치수	10,000	5	
	압축강도	37,000	5	
	흡수율	44,000	5	
속빈 콘크리트 블록 (3종목)	결모양 및 치수	10,000	5	1조10개
	압축강도	23,000	5	1조3개
	흡수율	43,000	5	
보·차도용 콘 크리트 인터로 킹 블록 (3종목)	보통블록 / 결모양 및 치수	10,000	5	1조5개
	보통블록 / 휨강도	32,000	5	
	보통블록 / 흡수율	31,000	5	
콘크리트 경계	결모양, 모양 및 치수	10,000	5	1조2개

블록(보차도용) (3종목)	휨강도	31,000	5	
	흡수율	29,000	5	
호안용 블록(1종목)	압축강도	26,000	4	1조3개
석재(3종목)	밀도 및 흡수율	46,000	4	1조5개 (5×5×5cm)
	압축강도	26,000	4	
	탄성과 속도	28,000	5	
<input type="checkbox"/> 현장시험경비(차량경비 + 여비) : \105,000원 <input type="checkbox"/> 장비운반차량 소요 경비(구역화물자동차 2.5톤급 20km이내 기준) : \45,000원 <input type="checkbox"/> 여비조례 규정에 따른 공무원 출장 여비 : \60,000원(20,000원 × 3인)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적용시기 : 2021. 2. 1일부터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5호, 장성군 고시 제2021-13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호(2020.12.31),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7호(2020.12.3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장·장성군수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 생략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참고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7호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061-390-744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시행중 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9.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

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635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 사업
 나. 명 칭 : 서림마을 행복주택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노 선 명	총 규 모	급의시행	비 고
중로1-22호선	B=15-32m, L=1,378m	B=20m, L=171m (당초)A=3,672.4㎡ (변경)A=3,698.2㎡	건고 24 ' 75.2.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대표 노경수)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 8. 1.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변경) : 붙임 참조

○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합 계					3,672.4	3,672.4	3,698.2		
1	임동 46-19		대		111.0	111.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2	임동 46-23		도		101.0	101.0			
3	임동 55-5		대		170.0	170.0			
4	임동 54-7		대		216.0	216.0			
5	임동 32-13		학		2.0	2.0			
6	임동 54-6		대		245.0	245.0			
7	임동 52-5		대		44.0	44.0			
8	임동 52-6		대		10.0	10.0			
9	임동 57-11		대		261.0	261.0			
10	임동 54-4		대		26.0	26.0			
11	임동 54-9		대		235.0	235.0			
12	임동 54-8		대		72.0	72.0			
13	임동 53-18	635	대	도	304.0	304.0	3,698.2		
14	임동 231-6		도		258.0	258.0			
15	임동 46-20		대		164.0	164.0			
16	임동 46-21		대		439.0	439.0			
17	임동 55-7		대		307.0	307.0			
18	임동 55-4		대		115.0	115.0			
18	임동 56-18		대		92.0	92.0			
20	임동 57-12		대		135.0	135.0			
21	임동 57-13		대		117.0	117.0			
22	임동 57-14		대		44.0	44.0			
23	임동 57-15		대		1.0	1.0			
24	임동 53-14		대		57.0	57.0			
25	임동 53-16		대		23.0	23.0			

26	임동	53-8		도		2.0	2.0		〃	〃
27	임동	51-17		대		121.4	121.4		〃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1호

도시관리계획(학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학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푸른도시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01. 30.

광 주 광 역 시 장

I. 도시계획시설(학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7	학동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24-9일원	51,978	51,401	감)577	

2. 공원지정현황

- 공인지정년월일 : 1967. 2. 20.(건고-144호)
- 조성계획 결정 : 2002. 12. 02.(광고-118호)
- 조성계획 최종 : 2019. 5. 15.(광고-104호)
- ※ 광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광고 제2020-253호' 20. 7. 1.)에 따라 공원면적 축소(51,978㎡ → 51,401㎡ 감 577㎡)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市 공원녹지과
- 변경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결정 고시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9.35%	8.54%	
건폐율(법정 15%이하)	2.51%	2.54%	
설치제한시설률(20%이하)	2.65%	2.68%	

II. 도시계획시설(학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z)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51,978.00	1,302.87	3,907.10		51,401.00	1,302.87	3,907.10	감) 577㎡
시설소계	4,859.74	1,302.87	3,907.10		4,387.65	1,302.87	3,907.10	-
기 반 시 설	소계	3,285.54	-	-	2,813.45	-	-	감) 472.09㎡
	도로	1,804.67	-	-	1,332.58	-	-	감) 472.09㎡
	광장	1,480.87	-	-	1,480.87	-	-	-
조경시설	169.14	-	-	169.14	-	-	-	
휴양시설	27.47	-	-	27.47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74.72	-	-	74.72	-	-	-	
교양시설	1,302.87	1,302.87	3,907.10	1,302.87	1,302.87	3,907.10	-	

편의시설	-	-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47,118.26	-	-	47,013.35	-	-	-	감) 104.91㎡
시설률 (법정 40%)	(4,859.74/51,978)×100 =9.35% (공원면적의 40%이하)	(4,387.65/51,401)×100 =8.54% (공원면적의 40%이하)	1,302.87	1,302.87	3,907.10	3,907.10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5%)	(1,302.87/51,978)×100 =2.50% (공원면적의 15% 이내)	(1,302.87/51,401)×100 =2.53% (공원면적의 15% 이내)	1,302.87	1,302.87	3,907.10	3,907.10	도시공원지침 4-1-3	
설치제한 시설율 (법정 20%)	(1,377.59/4,859.74)×100 =28.3% (시설면적 20% 이하)	(1,377.59/4,387.65)×100 =31.3% (시설면적 20% 이하)	1,302.87	1,302.87	3,907.10	3,907.10	시행규칙 12조5항	

※ 설치제한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기정	3	1	1.5	608.57	912.86	대상지 경계	광장1	
기정	3	2	1.5	106.15	159.22	소로1	소로1	
기정	3	3	1.5	173.67	260.50	광장2	소로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호

도시관리계획(봉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봉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남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01. 30.

광주광역시장

I. 도시계획시설(봉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9	봉주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191 일원	80,000	28,517	감)51,483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67. 2. 20.(건고-144호)
 - 조성계획 결정 : 2004. 11. 24.(광고-117호)
 - 조성계획 최종 : 2019. 5. 15.(광고-106호)
 - ※ 광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광고 제2020-253호(' 20. 7. 1.)에 따라 공원면적 축소(80,000㎡ → 28,517㎡ 감 51,483㎡)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市 공원녹지과
 - 변경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결정 고시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3.01%	8.44%	
건폐율(법정 10%이하)	0.00%	0.00%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0.00%	0.00%	

II. 도시계획시설(봉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80,000.00	-	-	28,517.00	-	-	감) 51,483
시설소계	2,407.97	-	-	2,407.97	-	-	
기 반 시설	소계	1,206.14	-	1,206.14	-	-	
	도로	724.82	-	724.82	-	-	
	광장	481.32	-	481.32	-	-	
조경시설	487.15	-	-	487.15	-	-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51,978.00	51,401.00	1,302.87	1,302.87	3,907.10	3,907.10	건폐율 2.50% 건적율 2.53% 시설률 9.35%
시설소계		4,859.74	4,387.65	1,302.87	1,302.87	3,907.10	3,907.10	시설률 8.54%
도로 및 광장	소 계	3,285.54	2,813.45	-	-	-	-	
	도 로	1,804.67	1,332.58	-	-	-	-	
	광 장	1,480.87	1,480.87	-	-	-	-	
조경시설	잔디마당	169.14	169.14	-	-	-	-	
휴양시설	쉼터	27.47	27.47	-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맨손운동	74.72	74.72	-	-	-	-	
교양시설	청소년수련관	1,302.87	1,302.87	1,302.87	1,302.87	3,907.10	3,907.10	지하2층 지상3층
편의시설	-	-	-	-	-	-	-	
관리시설	-	-	-	-	-	-	-	
녹 지	-	47,118.26	47,013.35	-	-	-	-	녹지율 90.65% 녹지율 91.46%

2. 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부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51,978.00	51,401.00	1,302.87	1,302.87	
시설총계				4,859.74	4,387.65	1,302.87	1,302.87	
도로 및 광장	소계			3,285.54	2,813.45	-	-	
	도로			1,804.67	1,332.58	-	-	
	광장1	학동 274-9	1,369.50	1,369.50	-	-	-	
	광장2	학동 269-2	111.37	111.37	-	-	-	
조경 시설	소계			169.14	169.14	-	-	
	2-1 잔디마당	학동 269-2	169.14	169.14	-	-	-	
휴양 시설	소계			9,700	9,700	-	-	
	3-1	쉼터1	학동 724-3	10.98	10.98	-	-	
	3-2	쉼터2	학동 산97-5	16.49	16.49	-	-	
운동 시설	소계			74.72	74.72	-	-	
	4-1	맨손운동	학동 724-3	56.02	56.02	-	-	맨손운동 기구3기
	4-2	맨손운동	학동 269-2	18.70	18.70	-	-	맨손운동 기구 3기
교양 시설	소계			3,820	3,820	719	3,309	
	7-1	청소년수련관	학동 724-9	1,302.87	1,302.87	1,302.87	3,907.10	지하2층 지상3층
편의 시설	소계			-	-	-	-	
				-	-	-	-	
관리 시설	소계			-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47,118.26	47,013.35	-	-	
	녹지			47,118.26	47,013.35	-	-	

3. 도로결정조서

등급	변경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계	기정	총 계	3,802	12,152	-				
소로	기정	소 계	888.39	1,332.58	-				

휴양시설	-	-	-	-	-	-	-	-	-
유회시설	-	-	-	-	-	-	-	-	-
운동시설	46.41	-	-	-	46.41	-	-	-	-
교양시설	-	-	-	-	-	-	-	-	-
편익시설	668.27	-	-	-	668.27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	-
녹지 및 기타	77,592.03	-	-	-	26,109.03	-	-	-	감) 51,483㎡
시설률 (법정 40%)	$(2,407.97/80,000) \times 100 = 3.01\%$ (공원면적의 40%이하)			$(2,407.97/28,517) \times 100 = 8.44\%$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0%)	$(0/80,000) \times 100 = 0.00\%$ (공원면적의 10% 이내)			$(0.00/28,517) \times 100 = 0.00\%$ (공원면적의 10% 이내)			도시공원지침 4-1-3		
설치제한 시설률 (법정 20%)	$(0.00/80,000) \times 100 = 0.00\%$ (시설면적 20% 이하)			$(0.00/28,517) \times 100 = 0.00\%$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12조5항		

※ 설치제한 : 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3. 도로결정조서

등급	변경구분	유형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총	계		480.73	724.82	-			
	기정	소	계		480.73	724.82	-			
소로	기정	3	1	1.5	180.62	270.93		광장2	소로2	
	기정	3	2	1.5	138.26	207.39		소로3	대상지경계	
	기정	3	3	1.5	128.94	193.41		광장1	소로4	
	기정	3	4	1.62	32.91	53.09		광장2	대상지경계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80,000.00	28,517.00	1,302.87	1,302.87	3,907.10	3,907.10	건폐율 0.00% 건폐율 0.00% 시설률 3.01% 시설률 8.44%
시설소계		2,407.97	2,407.97	1,302.87	1,302.87	3,907.10	3,907.10	
도로 및 광장	소	1,206.14	1,206.14	-	-	-	-	
	도로	724.82	724.82	-	-	-	-	
	광장	481.32	481.32	-	-	-	-	
조경시설	잔디마당, 플랜터	487.15	487.15	-	-	-	-	
휴양시설	-	-	-	-	-	-	-	
유회시설	-	-	-	-	-	-	-	
운동시설	맨손운동	46.41	46.41	-	-	-	-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668.27	668.27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녹지	-	77,592.03	26,109.03	-	-	-	-	녹지율 96.99% 녹지율 91.56%

광주광역시 도시 제2021-33호

도시관리계획(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광산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01. 30.

광주광역시

2. 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부지면적				80,000.00	28,517.00	-	-		
시설				2,407.97	2,407.97	-	-		
총계				2,407.97	2,407.97	-	-		
도로 및 광장		소계		1,206.14	1,206.14	-	-		
		도로		724.82	724.82	-	-		
		광장1		447.28	447.28	-	-		
		광장		34.04	34.04	-	-		
조경시설		소계		487.15	487.15	-	-		
		2-1 잔디마당		465.94	465.94	-	-		
	2-2 플랜터		21.21	21.21	-	-			
휴양시설		소계		-	-	-	-		
		-		-	-	-	-		
운동시설		소계		46.41	46.41	-	-		
		4-1 맨손운동		46.41	46.41	-	-	맨손운동기구3기	
교양시설		소계		-	-	-	-		
		소계		668.27	668.27	-	-		
편익시설		6-1 편익시설		668.27	668.27	-	-		
		소계		-	-	-	-		
관리시설		소계		-	-	-	-		
		소계		77,592.03	26,109.03	-	-		
녹지 및 기타		소계		77,592.03	26,109.03	-	-		
		녹지		77,592.03	26,109.03	-	-		

1. 도시계획시설(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69	황룡강대상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4-7 일원	41,410.5	31,834	감)9,576.5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98. 09. 15.(광고-122호)
- 조성계획 결정 : 2006. 12. 15.(광고-178호)
- 조성계획 최종 : 2019. 5. 15.(광고-110호)
-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고시 : 2019. 12. 16.(광고-313호)

16.(광고-313호)

- 황룡강대상근린공원(100,504㎡) r 선운공원(59,093.5㎡)
l 황룡강대상공원 (41,410.5㎡) 분리

결정.

- ※ 광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광고 제2020-253호(' 20. 7. 1.)에 따라 공원면적 축소(41,410.5㎡ → 31,834㎡ 감 9,576.5㎡)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市 공원녹지과
- 변경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결정 고시에 따라 공원 외 지역 및 제방으로 관리되는 구역을 공원에서 실효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함.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물(법정 40%이하)	8.54%	9.81%	
건폐율(법정 15%이하)	0.00%	0.00%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0.00%	0.00%	

II. 도시계획시설(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총계	41,410.50	-	-	31,834.00	-	-	감)9,576.5
시설소계	3,537.44	-	-	3,123.03	-	-	감) 414.41㎡
기반시설	소계	2,939.37	-	2,524.96	-	-	감) 414.41㎡
	도로	2,868.42	-	2,454.01	-	-	감) 414.41㎡
	광장	70.95	-	70.95	-	-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	-	-	-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	-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598.07	-	-	598.07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37,873.06	-	-	28,710.97	-	-	감) 9,162.09㎡
시설률 (법정 40%)	$(3,537.44/41,410.5) \times 100 = 8.54\%$ (공원면적의 40%이하)		$(3,123.03 / 31,834) \times 100 = 9.81\%$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0%)	$(0/41,410.5) \times 100 = 0.00\%$ (공원면적의 15% 이내)		$(0.00 / 31,834) \times 100 = 0.00\%$ (공원면적의 15% 이내)		도시공원지침 4-1-3		
설치제한 시설율 (법정 20%)	$(0.00 / 3,537.44) \times 100 = 0.00\%$ (시설면적 20% 이하)		$(0.00 / 3,123.03) \times 100 = 0.00\%$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12조5항		

※ 설치제한 : 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41,410.50	31,834.00	-	-	-	-	-	-	건폐율 0.00% 건폐율 0.00%
시설소계	-	3,537.44	3,123.03	-	-	-	-	-	-	시설률 8.54% 시설률 9.81%
도로 및 광장	소계	2,939.37	2,524.96	-	-	-	-	-	-	-
	도로	2,868.42	2,454.01	-	-	-	-	-	-	-
	광장	70.95	70.95	-	-	-	-	-	-	-
조경시설	잔디마당, 플랜터	-	-	-	-	-	-	-	-	-
휴양시설	-	-	-	-	-	-	-	-	-	-
유희시설	-	-	-	-	-	-	-	-	-	-
운동시설	맨손운동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편익시설	-	598.07	598.07	-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	-	-
녹지	-	37,873.06	28,710.97	-	-	-	-	-	-	녹지율 91.46% 녹지율 90.19%

2. 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부지면적				41,410.50	31,834.00	-	-		
시설총계				3,537.44	3,123.03	-	-		
도로 및 광장	소계			2,939.37	2,524.96	-	-		
	도로			2,868.42	2,454.01	-	-		
	광장1			70.95	70.95	-	-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	-	-	-		
소계				-	-	-	-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	-	-	-		
		소계		-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소계		-	-	-	-		
편익시설	2-1	편익시설	선암동 54-7	598.07	598.07	-	-		
				-	-	-	-		
관리시설		소계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37,873.06	28,710.97	-	-		
		녹지		37,873.06	28,710.97	-	-		

3. 도로결정조서

등급	변경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총	계		1,179.00	2,454.01	-			
소로	기정	소	계		1,179.00	2,454.01	-			
	기정	3	1	5.91	61.91	366.16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2	2.0	87.95	175.90	소로1	소로1		
	기정	3	3	1.5	37.98	56.97	소로2	소로4		
	기정	3	4	1.5	120.59	180.89	소로2	대상지 경계		
	기정	3	5	1.5	63.28	94.92	소로1	소로1		
	기정	3	6	1.5	72.05	108.07	소로5	소로5		
	기정	3	7	2.1	45.74	92.10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8	2.0	96.98	193.96	소로7	소로10		
	기정	3	9	2.0	15.87	31.74	소로8	대상지 경계		
	기정	3	10	2.0	180.07	360.13	대상지 경계	소로12		
	기정	3	11	2.0	23.65	47.29	소로10	대상지 경계		
	기정	3	12	2.0	46.36	92.72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13	2.0	268.97	537.94	소로12	대상지 경계		
	기정	3	14	2.0	24.96	49.92	소로13	대상지 경계		
기정	3	15	2.0	32.65	65.30	소로13	대상지 경계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4호

도시관리계획(광주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광주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푸른도시사업소공원운영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01. 30.

광주광역시

I. 광주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사

구분	공원 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역사공원	광주공원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일원	46,782	-	46,782	1943.4.19. (조선시가지 계획령)	

2. 공원이정 및 결정현황

- 공원이정년월일 : 1943.04.19.(조선시가지 계획령)
- 조성계획결정 : 1990.06.14.(건고 제342호)
-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 2012. 7. 15(광고제2012-114호)
 - 근린공원 → 주재공원(역사공원)으로 변경
- 조성계획 최종 : 2020.11.10.(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67)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 신청내용 : 4·19혁명 추모비 복원 및 4·19혁명 기념탑 신축
 - 교양시설 당초 6,851.1㎡ → 변경 6,911.1㎡ **증 60㎡**
 - 기반시설 당초 3,149.7㎡ → 변경 3,119.7㎡ **감 30㎡**
 - 녹지 및 기타 당초 26,539.8㎡ → 변경 26,509.8㎡ **감 30㎡**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률(법정 제한없음)	43.2%	43.3%	
건폐율(법정 20%이하)	7.13%	7.58%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4.09%	4.09%	

II. 광주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사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사 총괄표(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46,782.0	8	3,333.42	6,576.62	46,782.0	8	3,333.42	6,576.62	8
시설소계	20,242.2	-	-	-	20,272.2	-	-	-	-
기반시설	소계	9,689.2	-	-	9,659.2	-	-	-	-
	도로	6,539.5	-	-	6,539.5	-	-	-	-
광장	3,149.7	-	-	3,119.7	-	-	-	-	
조경시설	463.9	-	-	463.9	-	-	-	-	
휴양시설	1,437.0	2	590.50	1,421.80	1,437.0	2	590.50	1,421.80	
유희시설	-	-	-	-	-	-	-	-	-
운동시설	213.6	-	-	-	213.6	-	-	-	-
교양시설	6,851.1	4	2,832.13	5,075.54	6,911.1	4	2,619.02	5,030.92	8
편익시설	1,587.4	2	123.90	123.90	1,587.4	2	123.90	123.90	
공인관리시설	-	-	-	-	-	-	-	-	-
녹지및기타	26,539.8	-	-	-	26,509.8	-	-	-	-
시설률(법정 40%)	(20,242.2 / 46,782.0) × 100 = 43.2% (제한없음)				(20,272.2 / 46,782.0) × 100 = 43.3% (제한없음)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법정 15%)	(3,546.53 / 46,782.0) × 100 = 7.58% (공원면적의 15%이하)				(3,546.53 / 46,782.0) × 100 = 7.58% (공원면적의 15%이하)				(지침 4-1-3)
설치제한시설율(법정 20%)	(828.3/20,242.2)×100 = 4.09% (시설면적 20% 이하)				(828.3/20,242.2)×100 = 4.09%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12조5항

※ 설치제한 : 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 세부시설 결정조사(변경)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 전체면적 합계			기정	46,782.0	8	3,333.42	6,576.62	7		
			변경	46,782.0	8	3,333.42	6,576.62	8		
공원내 시설부지면적 소계			기정	20,242.2	8	3,333.42	6,576.62	7		
			변경	20,272.2	8	3,333.42	6,576.62	8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9,689.2			
							9,659.2			
	변경	소계								
	기정	1	도로	21-1공						
	변경	2	중앙광장	21-1공						
	기정	3	진입광장①	37-97대				97.0		
	기정	4	기념광장	21-1공				2,076.80		
기정	5	소광장	16-2임				30.1			
기정		소계					463.9			
기정		소계					1,437.0	2	590.5 1,421.8	
기정	가	휴게소	31-2임				71.0	1	70 140	
기정	나	노인복지회관	16-48임				614.7	1	520.5 1,281.80	
기정	다	쉼터①	13-2임				256.0			
기정	라	쉼터②	21-1공				130.7			
기정	마	쉼터③	21-1공				24.6			
기정	바	쉼터④	21-1공				22.1			
기정	사	쉼터⑤	21-1공				38.7			
기정	아	쉼터⑥	21-5공				54.9			
기정	자	쉼터⑦	21-5공				98.3			
기정	차	연지	37-99대				126.0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기정	소계					213.6											
교양시설	기정	A	체력단련장	21-1공			213.6											
교양시설	기정	소계					6,851.1	4	2,619.02 5,030.92 7									
								6,911.1	4	2,619.02 5,030.92 8								
기정	a	5.18표지석 4.19추모비	21-1공				110.0		1									
										변경	a	5.18표지석 4.19추모비, 4.19혁명기념탑	21-1공			170.0		2
										기정	b	공원문화관	21-1공			844.1	1	704 1,370.0
										기정	c	비군	21-1공			257.5		1
										기정	d	층훈탑	21-1공			1,164.2		1
										기정	e	위패방안소	21-1공			204.3	1	165 165
										기정	f	서오층석탑	16-2임			68.9		1
										기정	g	시인비	16-2임			55.1		1
										기정	h	삼남일장군비	16-2임			32.8		1
										기정	i	회경루	32-19공			2,114.0	1	297.38 462.71
기정	j	시민회관	21-1공				1,994.2	1	1,452.64 3,033.21									
										1층 공연장사 무실 휴게음식점 꽃길								
기정	k	신동육선생 향일사적비	16-2임			6.0		1 2.5x1.2										
편익	기정	소계					1,587.4	2	123.9 123.9									
기정	-1	화장실①	21-1공				130.6	1	51 51									

	기정	-2	화장실②	32-1공	79.4	1	72.9	72.9		
	기정	-3	주차장	21-1공	1,353.4					
	기정	-4	주차장	31-19공	24.0					
녹지	기정	소계			26,539.8					
	변경				26,509.8					

(푸른도시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1. 30.

광주광역시

I. 도시계획시설(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174	근린공원	금남로공원	3,489.8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20-2 일원	

2. 공원지정 및 결정현황

- 공원지정 년 월 일 : 2003. 11. 15. (광주광역시고시 제157호)
- 공원조성계획 수립 : 2004. 8. 21. (광주광역시고시 제89호)
- 공원조성계획 최종 수립 : 2019. 12. 10. (광주광역시 고시 310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 변경사유 : 본 금남로공원에 광주3·15의거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법적 검토사항

- 공원시설율 : 35.88% (법정40%미만)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489.8	3,489.8	11.3	11.3	11.3	11.3	
시설소계		1,252.1	1,252.4	11.3	11.3	11.3	11.3	시설율 : 35.88%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884.0	884.0					
조경시설	벽천의 2종	202.0	202.0					
휴양시설	휴게데크의 2종	95.0	95.0					
교양시설	야외무대의 1종	45.6	45.9					3·15의거표지석 1개소설치
편익시설	화장실	25.5	25.5					
공원관리시설	안내판							
녹지		2,237.7	2,237.4					녹지율 : 64.11%

II. 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489.8	3,489.8	11.3	11.3	11.3	11.3	
시설소계		1,252.1	1,252.4	11.3	11.3	11.3	11.3	시설율 : 35.88%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884.0	884.0					
조경시설	벽천의 2종	202.0	202.0					
휴양시설	휴게데크의 2종	95.0	95.0					
교양시설	야외무대의 1종	45.6	45.9					3·15의거표지석 1개소설치
편익시설	화장실	25.5	25.5					
공원관리시설	안내판							
녹지		2,237.7	2,237.4					녹지율 : 64.1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5호

도시관리계획(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

2.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3,489.8	11.30	11.30	1동(30기)	
	변경				3,489.8	11.30	11.30	1동(31기)	
	기정	시설소계			1,252.1	11.30	11.30	1동(30기)	시설율 35.87%
	변경				1,252.4	11.30	11.30	1동(31기)	시설율 35.88%
도로	기정	소	계		884.0	-	-	-	
광장	기정		도	로	전	지	역	340.0	
	기정		광	장				544.0	(4개소) 상정조형물(1기)
	기정	1-1	상정광장	금남로3가 20-2대				111.0	(1개소)
	기정	1-2	선큰광장	금남로3가 20-2대				273.0	(1개소)
	기정	1-3	소광장-1	금남로3가 20-2대				80.0	(1개소)
	기정	1-4	소광장-2	금남로3가 20-2대				80.0	(1개소)
조경	기정	소	계		202.0	-	-	(4기)	
시설	기정	2	벽	천	소광장-1,2 내			173.0	(1개소)
	기정	3	상정조형물		상정광장-1 내			29.0	(1개소)
	기정	①	앉음벽		부지 내			-	(4기)
휴양	기정	소	계		95.0	-	-	(25기,3개소)	
시설	기정		휴게데크					95.0	(3개소)
	기정	4-1	휴게데크-1					66.0	(1개소) 야외탁자(5기)
	기정	4-2	휴게데크-2					29.0	(1개소)
	기정	4-3	휴게데크-3						(1개소) 어번폴리데크면적 70.14㎡
	기정	②	야외탁자					-	(5기)
	기정	③	벤치					-	(20기)
	기정	③	벤치					-	(20기)
교양	기정	소	계		45.6	-	-	(1개소,1기)	
변경	변경				45.9	-	-	(1개소,2기)	
	변경								
시설	기정	5	야외무대					45.0	(1개소)
	기정	6	4.19억명표지석					0.6	(1기)
	신설	7	3·15의거표지석					0.3	(1기) 3·15의거표지석 1개소 설치
편익	기정	소	계		25.5	11.30	11.30	1동	
시설	기정	8	화장실					25.5	11.30 11.30 1동
공원	기정	소	계		-	-	-	-	
관리	변경				-	-	-	(1개소)	
시설	기정	④	안내판						(1개소)
녹지	기정	-	녹지		2,237.7				녹지율 64.12%
	변경	-	녹지		2,237.4				녹지율 64.11%

3.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340.0				
기정	소	로	3	소	계	156.0				
기정			1	6.0	17.0	102.0	시설연결	선큰광장	소광장-1	
기정			2	3.0	7.0	21.0	시설연결	선큰광장	소광장-2	
기정			3	3.0	11.0	33.0	시설연결	소광장-2	소로3-4	
기정	산책로		소	계		184.0				
기정			1	2.0	92.0	184.0	산책로	금남로3가 20-2대	충장로3가1-1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6호

광주 생태문화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9.

광주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충효동 일원 원효사 노후 상가 이주단지 조성 및 생태문화 관광거점 마련을 위한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
· 면적 : 143,631㎡

4.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5. 시행기간

· 2020. 6. 15. ~ 2022. 12.

6. 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본 고시로 인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별첨2”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062-613-1783)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062-613-4231)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건축과(☎ 062-410-6728)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I. 광주 생태문화마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143,631	-	143,631	100.0		
주거지역	소	27,614	증20,026	47,640	33.3	
	제1종일반주거지역	27,614	감12,191	15,423	10.9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2,217	32,217	22.4	
	소	116,017	감20,026	95,991	66.7	
자연녹지지역	자	116,017	감20,026	95,991	66.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충효동446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2,344	·광주 생태문화마을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충효동883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10	
3	충효동877-2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97	
4	충효동756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840	
5	충효동879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32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	143,631	-	143,631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22	2,099	24,443	19	1,273	10,418	3	826	14,025
중로	3	826	14,025	-	-	-	3	826	14,025
소로	19	1,273	10,418	19	1,273	10,418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정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4,051	구곡동 403-18	담양군 남면구역계	일반도로	무등산 자연공원	전고65 (82.04.24)	
변경	중로	3	19	12-18	집산도로	4,051 (388)	구곡동 403-18	담양군 남면구역계	일반도로	무등산 자연공원		
신설	중로	3	A	12-15	집산도로	135	중3-19	충효동 88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B	12	집산도로	103	중3-19	충효동 7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3	소로2-1	충효동444-2	일반도로		광고06-39 (06.03.07)	
변경	소로	2	2	8-10	국지도로	92 (32)	중로3-19	소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02 (222)	충효동 445-2	충효분교	일반도로	북구17-14 (17.02.01)		
기정	소로	2	816	8	국지도로	1,263	충효동 876-8	덕의동 209-9	일반도로	북구18-109 (18.06.15)		
변경	소로	2	816	8-14	국지도로	1,263 (92)	충효동 876-8	덕의동 209-9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A	8	특수도로	64	경관녹지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B	8	특수도로	271	소로2-C	소로2-C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C	8	특수도로	192	소로2-B	중로3-A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D	8	특수도로	36	충효동700-2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E	8	특수도로	44	소로2-C	충효동453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F	8	특수도로	44	소로2-C	충효동457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G	8	특수도로	44	소로2-C	충효동458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H	8	특수도로	70	중로3-B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정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I	8	특수도로	22	소로2-B	충효동880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J	8	특수도로	30	소로2-B	충효동455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K	8	특수도로	22	소로2-C	충효동879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L	8	특수도로	30	소로2-B	충효동879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M	8	특수도로	15	충효동877-2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N	8	특수도로	15	충효동881-1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O	8	특수도로	14	충효동700-1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P	8	특수도로	14	충효동 757	소로2-B	보행자 우선도로			

※ ()는 구역 내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3-19	중로 3-19	·구역 내 노선폭 확장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변경
-	중로 3-A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중로 3-B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소로 2-2	소로 2-2	·구역 내 노선폭 확장 및 연장 변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변경
소로 2-816	소로 2-816	·구역 내 노선폭 확장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변경
-	소로 2-A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B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C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D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E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F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G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H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I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J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K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L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M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N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O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소로 2-P	·노선 신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로망계획에 의한 노선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충효동 447 일원	-	증) 10,818	10,818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충효동 764-1 일원	-	증) 5,891	5,89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주차장	·신설 ·면적 : 10,818㎡	·단지 내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신설
2	주차장	·신설 ·면적 : 5,891㎡	·단지 내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충효동 880	-	증) 1,976	1,976		
신설	2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661	-	증) 1,338	1,338		
신설	3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753-1	-	증) 266	266		
신설	4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759-2	-	증) 358	358		
신설	5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760-1	-	증) 252	252		
신설	6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760-1	-	증) 252	252		
신설	7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1021-9	-	증) 270	270		
신설	8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881-2	-	증) 264	264		
신설	9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881-2	-	증) 264	264		
신설	10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881-2	-	증) 264	264		
신설	11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454	-	증) 301	301		
신설	12	광장	일반광장(근린광장)	충효동 457	-	증) 323	323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광장	· 신설 · 면적: 1,976㎡	· 거주민의 집회·행사·사교의 필요에 의한 광장 신설
2	광장	· 신설 · 면적: 1,338㎡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3	광장	· 신설 · 면적: 266㎡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4	광장	· 신설 · 면적: 368㎡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5	광장	· 신설 · 면적: 252㎡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6	광장	· 신설 · 면적: 252㎡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7	광장	· 신설 · 면적: 270㎡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8	광장	· 신설 · 면적: 264㎡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9	광장	· 신설 · 면적: 264㎡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10	광장	· 신설 · 면적: 264㎡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11	광장	· 신설 · 면적: 301㎡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12	광장	· 신설 · 면적: 323㎡	· 거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신설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충효동 882 일원	-	증)5,188	5,188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충효동 771 일원	-	증)1,966	1,96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5,188㎡	· 쾌적한 단지조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1,966㎡	· 쾌적한 단지조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충효동 443-11 일원	-	증) 9,786	9,786		저류시설중복결정
신설	2	공원	소공원	충효동 876-1 일원	-	증) 3,050	3,050		
신설	3	공원	소공원	충효동 761-1 일원	-	증) 1,870	1,87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	소공원	· 신설 · 면적: 9,786㎡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2	소공원	· 신설 · 면적: 3,050㎡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3	소공원	· 신설 · 면적: 1,870㎡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유네스코세계 지질공원 플랫폼	충효동 883 일원	-	증) 6,583	6,583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문화시설	· 신설 · 면적: 6,583㎡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설치를 위한 문화시설 신설

라)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충효동 443-1	-	증) 3,600	3,600		소공원에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	유수지	· 신설 · 면적: 3,600㎡	·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근린생활 시설 용지 (이주 단지)	A1	1,320.00	-1	330.00	
			-2	330.00	
			-3	330.00	
			-4	330.00	
	A2	1,980.00	-1	330.00	
			-2	330.00	
			-3	330.00	
			-4	330.00	
			-5	330.00	
			-6	330.00	
	A3	1,980.00	-1	330.00	
			-2	330.00	
-3			330.00		
-4			330.00		
-5			330.00		
-6			330.00		
A4	1,631.25	-1	323.75		
		-2	330.00		
		-3	323.75		
		-4	323.75		
		-5	330.00		
A5	1,631.25	-1	323.75		
		-2	330.00		
		-3	323.75		
		-4	330.00		
		-5	323.7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면적(㎡)		비고
			위치	면적(㎡)	
근린생활 시설 용지 (이주 단지)	A6	1,650.00	-1	330.00	
			-2	330.00	
			-3	330.00	
			-4	330.00	
			-5	330.00	
	A7	1,301.25	-1	323.75	
			-2	330.00	
			-3	323.75	
			-4	323.75	
	A8	1,961.25	-1	330.00	

			-2	323.75	
			-3	323.75	
			-4	330.00	
			-5	330.00	
			-6	323.75	
A9	1313.75		-1	323.75	
			-2	330.00	
			-3	330.00	
			-4	330.00	
A10	1,320.00		-1	330.00	
			-2	330.00	
			-3	330.00	
			-4	330.00	
A11	1307.25		-1	323.75	
			-2	323.50	
			-3	330.00	
			-4	330.00	
A12	990.00		-1	330.00	
			-2	330.00	
			-3	330.00	

※ 연결한 2개 필지 또는 4개 필지 합병가능(합병 후 분할 금지)

나)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문화시설	B	6,583	-	6,583	

다)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힐링촌	C	8,840	-	8,840	

라)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주차장	D	16,709	- 1	10,818	
			- 2	5,891	

마) 경관단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경관단지	E	39,325	-	39,325	

바) 통합물관리(에코위터)센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공공하수처리시설	F	1,357	-	1,35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용지	A	건축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주단지)	용도	분류	계획내용
			· 단독주택[1층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호스텔업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최상층 1개층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종로판매소,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허용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유형별(개별, 맞벽, 공동개발 2필지, 4필지) 건축한계선 지정

※ 호스텔업 :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국내의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문화시설	B	건축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2층 이하	

다)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힐링촌	C	건축물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의 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소형호텔업의 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사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2층 이하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체험업 :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DL, D2	건축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륜	· 60%이하

마) 경관단지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경관단지	E	건축물용도	허용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륜	· 60%이하	

바) 통합물관리(에코워터)센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F	건축물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륜	· 60%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	·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 내 차량출입 불허함 단, 조업차량은 가능	

나) 주민(건축)협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주민(건축)협정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주민참여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주민(건축)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주민협의회	·(가칭)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운영위원회를 형성하여 주민협정의 제정 및 변경을 제안하며 주민협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및 실천, 지도 등의 기능을 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 밀도, 배치, 외관, 형태, 색채, 건축선 등

다)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내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단지)의 경우 건축물에 관한 밀도, 배치, 형태와 색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이주단지를 관장하는 담당부서(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공원조성계획

가) 소공원1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총 계	9,786	-	-	-	-	
시설소계	1,356	-	-	-	-	13.9%
기반시설	소 계	1,065	-	-	-	
	보행자도로	997	-	-	-	
	광 장1	29	-	-	-	1-1
휴양시설	소 계	291	-	-	-	
	휴게쉼터	165	-	-	-	2-1

섬	터	101	-	-	-	-	2-2
파고라	섬터	25	-	-	-	-	2-3
녹지	녹 지	4,830	-	-	-	-	
저류지	저 류 지	3,600	-	-	-	-	3

나) 소공원2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총 계	3,050	-	-	-	-	
시설소계	490	-	-	-	-	16.1%
기반시설	소 계	348	-	-	-	
	보행자도로	216	-	-	-	
	광 장	132	-	-	-	
휴양시설	포켓쉼터	142	-	-	-	
녹 지		2,560	-	-	-	

다) 소공원3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총 계	1,870	-	-	-	-	
시설소계	331	-	-	-	-	17.7%
기반시설	보행자도로	297	-	-	-	
	광 장	34	-	-	-	
녹 지		1,539	-	-	-	

II. 환벽·수리마을

1. 환벽마을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0	환벽	충효동 843-2 일원	86,872	감)2,282	84,59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지정목적
변경	80	환벽	·면적감소 면적:86,872㎡→84,590㎡ 감)2,282㎡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제적으로 인한 면적감소	기존 시가지의 정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역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주요 내용				비고
					용도지역	면적(㎡)	건폐율(%)	용적률(%)	
기정	80	환벽	충효동 843-2일원	86,872	제1종일반주거지역	75,677	60	150	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11,195	20	60	3층이하
변경	80	환벽	충효동 843-2일원	84,590	제1종일반주거지역	73,395	60	150	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11,195	20	60	3층이하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80	환벽	·면적감소 - 면적:86,872㎡→84,590㎡ 감)2,282㎡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제적으로 인한 면적감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1	충효동 886-3	충효동 438-2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61	소2-2	중3-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3	소2-1	충효동 444-2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91	소2-2	소2-1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91	소2-2	소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0	소2-2	소3-1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61	충효동 397-5	충효동 394-5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2-1	소로2-1	노선감소 -L=241m → 161m, 갑80m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복된 부분의 완벽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적으로 인한 노선단축
변경	소로3-1	소로3-1	가각전제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복된 부분의 가각전제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8	노외주차장	북구 충효동 442-4 일원	5,197	-	5,197	광고 39' 06. 3. 7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42	공원	어린이공원	충효동 911 일원	909	-	909	광고 39' 06. 3. 7	

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건축선의 계획, 대지로의 차량출입 등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2. 수리마을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1	수리	충효동 853 일원	57,670	감)24,859	32,81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지정목적
변경	81	수리	면적감소 - 면적:57,670㎡ → 32,811㎡ 감)24,859㎡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제적으로 인한 면적감소	기존 시가지의 정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역명	위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주요 내용				비고	
					용도지역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기정	81	수리	충효동 853 일원	57,670	제1종일반주거지역	57,670	60	150	4층이하	
변경	81	수리	충효동 853 일원	32,811	제1종일반주거지역	32,811	60	150	4층이하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81	수리	면적감소 - 면적:57,670㎡ → 32,811㎡ 감)24,859㎡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제적으로 인한 면적감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4,051(116)	금곡동 중3-18	담양군 남면구역계	일반도로	무등산자연공원	점교 65' 8" '82. 4.24 38' 04" '04. 3.25 광고 109' 07" '07. 4.13
변경	중로	3	19	12~18	집산도로	4,051(116)	금곡동 중3-18	담양군 남면구역계	일반도로	무등산자연공원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57	소3-1	충효동 444-2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26	소3-1	중3-19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70	충효동 892-3	충효동 872	일반도로		광고 39' 06. 3. 7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3-19	중로3-19	일부 노선폭 확장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부구역 노선폭 확장
변경	소로2-1	소로2-1	노선감소 -L=257m → 26m, 갑)231m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복된 부분의 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적으로 인한 노선단축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69	노외주차장	북구 충효동 886-2 일원	555	감)555	-	광고 39' 06. 3. 7	수리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주차장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69	노외 주차장	폐지 - 면적 : 555㎡ → 0㎡ 감)555㎡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적으로 인한 시설 폐지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41	공원	어린이공원	충효동 47일원	1,214	감)1,214	-	광고 39' 06. 3. 7	수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41	공원	면적 축소 - 면적 : 1,214㎡ → 0㎡ 감)1,214㎡	광주 생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부분의 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적으로 인한 시설 폐지

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건축선의 계획, 대지로의 차량출입 등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별첨2]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 교통시설

○도 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2,099	24,443	-	-	-	19	1,273	10,418	3	826	14,025
중로	3	826	14,025	-	-	-	-	-	-	3	826	14,025
소로	19	1,273	10,418	-	-	-	19	1,273	10,418	-	-	-

○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16,709	2개소
1	충효동 447 일원	10,818	주차장(신설)
2	충효동 764-1 일원	5,891	주차장(신설)

2. 공간시설

○ 광 장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6,128	총 12개소
1	충효동 880	1,976	중심대광장(신설)
2	충효동 661	1,338	근린광장(신설)
3	충효동 753-1	266	근린광장(신설)
4	충효동 759-2	358	근린광장(신설)
5	충효동 760-1	252	근린광장(신설)
6	충효동 760-1	252	근린광장(신설)
7	충효동 1021-9	270	근린광장(신설)
8	충효동 881-2	264	근린광장(신설)
9	충효동 881-2	264	근린광장(신설)
10	충효동 881-2	264	근린광장(신설)
11	충효동 454	301	근린광장(신설)
12	충효동 457	323	근린광장(신설)

○ 녹 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7,154	
1	충효동 882 일원	5,188	완충녹지(신설)
2	충효동 771 일원	1,966	완충녹지(신설)

○ 공 원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14,706	
1	충효동 443-11 일원	9,786	소공원(신설)
2	충효동 876-1 일원	3,050	소공원(신설)
3	충효동 761-1 일원	1,870	소공원(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1	충효동 883일원	6,583	문화시설(신설)

4. 방재시설

○ 유수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1	충효동443-1	3,600	저류시설(신설)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6호

광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류331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2.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2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동구 용산동 297번지 도로개설사업(소로1-331호선)

3. 면적 및 규모

노 선 명	총연장(m)	기 시 행(m)	급회시행(m)	급후시행(m)	비 고
소로1-331호선	●L=622m ●B=10m	●L=223m ●B=10m	●L=55m ●B=10m	●L=344m ●B=1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토지조서 참조
(관계도면 및 지장물건 조서 등 기타권리명세서 게재는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토 지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관계인		비고
	동	지 번 (당초)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출납)	성 명	주 소	
계		2필지		3,288.1	529.3						
1	용산동	297-14 (297)	대	2788.2	457.5	주식회사 남선	동구 남문로 621번길 5				
2	용산동	297-16 (297-7)	천	499.9	71.8	광주광역시					
3											
4											
5											
6											
7											
8											
9											
10											
11											

광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572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2.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64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지원로12번길 주변 도로개설사업(소로2-572호선)

3. 면적 및 규모

노 선 명	총연장(m)	기 시 행(m)	금회시행(m)	금후시행(m)	비 고
소로2-572호선	●L=113m ●B=8m	●L=35m ●B=8m	●L=78m ●B=8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이 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토지조서 참조
(관계도면 및 지장물건 조서 등 기타권리명세서 게재는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토 지 조 서

구분	소 계 지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배입 토지	소태동	643-9	전	594	594	0.5	정지영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송영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	"	643-8	전	51	51	0.5	정지영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송영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	"	643-3	전	75	75	0.5	정지영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송영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12번길7(소태동)			
계	3필지			720	720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1. 29.]

광 주 광 역 시 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
- 2) 명 칭 : 서림마을 행복주택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1) 도로

노 선 명	총 규모	금회시행	비 고
중로1-22호선	B=15-32m, L=1,378m	B=20m, L=171m A=3,698.2㎡	건고 24 ' 75.2.18.

라.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대표 노경수)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18. 4. 30.(착공) ~ 2020. 12. 23.(준공)